

### 원칙1 산학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 「상호 유익적」 운영

#### □ ‘부탁과 형식적 운영’ 아닌 ‘상호 필요와 유익’ 운영

- 현장실습학기제의 성과와 상호 유익은 운영규정 제4조(운영 원칙)의 상호 유익에 대한 이해
- 미래 해당 산업분야의 ‘인재양성’을 위한 ‘투자’

### 원칙2 수업요건 구비

#### □ 수업영역으로서의 조건 구비

- 현장실습학기제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의 영역으로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, 수업계획(운영계획)의 구비 후 수강신청 등의 등록절차를 통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
-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영역, 학교에서 의무이수 요건으로 할 경우 학교에서 충분한 실습기관 확보하는 여건을 구비
- ‘현장실습’을 학생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

### 원칙3 전공 관련성

- 전공관련성에 기반을 두어 이수하길 권고, 일부 실습기관에서 ‘전공 무관’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.
- 일경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,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 (※주의)
-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실습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된 전공을 특정하거나, 최소한 관련 계열까지는 특정하도록
- ‘전공 무관’ 형태로 운영되어도 일경험적 측면의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, 단순 일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.

#### 제4조(운영 원칙)

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.

제5조(적합성 검토) 학교에서는 제4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·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.

1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(학과)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

### 원칙4 목적과 범위 준수

#### □ 일과 교육의 경계 준수 필요

- 일에 기반을 둔, 학습제도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목적과 범위로 운영 금지.
- 실습기관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점검, 지도 등의 시간을 확보,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직무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.
-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업무 내에서 지정된 실습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 직무설정, 학생이 직무 수행을 통해 업무 이해와 기여 설계 필요.

- 학생은 근로자와 달리 현장실습교육범위 설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협의.

#### 원칙5 교육시간 배정 운영

- (1일 8시간 기준) 25%는 2시간. 최소 10% 이상 최대 25% 이하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교육시간 비율 설정.
- 25% 초과하는 교육시간 할애 할 수 있다면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.
- 교육시간 비율이 25%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 75%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경우 표준현장실습 운영가능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0% 이상 최대 25% 이하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형태 교육시간 비율이 25%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
-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실습지원비와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시간 배정 협의 시 실습지원비 기준을 확인하여 운영.

#### 원칙6 실습지원비 지급

-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「소득세법」 제12조(비과세 소득) 제3호제서항에서 규정하는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이 아님 실습지원비를 학교를 통해 장학금 형태로 처리하여 지급해선 안됨